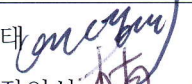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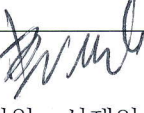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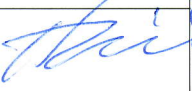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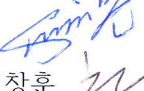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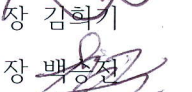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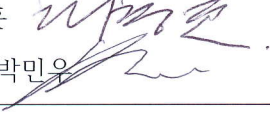


제9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3.02.13(수) 16:30~17:50
		장 소	공대 206호 회의실
제 목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		
출석자명	기획처장 변영태  학생처장 윤순종  사무처장 전성표  교학관리처장 장인식  외부전문가위원 심재익  (서울)총학생회장 김학기  (서울)법과대학생회장 최창훈  (세종)총학생회장 백승현  (세종)과학기술대 학생회장 박민우 		
결석자명			
협의사항 및 회의내용	<p>(기획처장) 등록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제9차 등심위 개최를 선언함.</p> <p>(서울)총학생회장 : 학교측에서 제출한 등록금 책정안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은 장학금 확충도 좋지만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임.</p> <p>(세종)총학생회장 : 장학금확충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한마음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며 소득분위 1~5 분위 사이의 학생들이 현재 '한마음 장학금' 대상인데 현재 학교의 장학 시스템은 기초수급자 포함 3분위 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정임. 또한 4~5분위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령금액이 최소 3분위 보다 1/4로 줄어드는 실정임. 하여 현재 '한마음 장학금' 시스템에 대한 자격조건이 소득분위만을 놓고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함. 또한 장학금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의구심이 듦. 장학 시스템(한마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p> <p>등록금 동결+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0.5%)+장학금 확충 금액을 비교하면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학생위원측 의견은 등록금을 최소한도로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측의 입장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p> <p>(사무처장) 2013학년도에는 장학금 확충 및 강사료 인상, 전임교원 초과강의로 인상, 용역비 인상, 자연승급분 인상, 연구비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약 5.4% 정도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하여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 동결에 대한 양해를 구함.</p> <p>(학생처장)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한마음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함. - 국가장학금(Ⅱ 유형) 가배정액 수령에 따른 등록금 인하와 동결, 장학금 확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충이 최선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2.15(금)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학생에게 불합리한 장학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함.</p> <p>(사무처장) 등록금 인하가 좋은지 장학금을 많은 학생에게 주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함.</p> <p>(세종)총학생회장 : 적립금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립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p>		

	<p>(사무처장) 매번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적립금은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며 적립금은 기금회계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 등을 적립하는 것임을 설명함.</p> <p>(서울)법대학생회장 :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다만 법인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이 타대학에 비하여 적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법인 전입금을 대학에 많이 내면 등록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문의함.</p> <p>(사무처장) 우리 학교 법인은 수익사업이 미약하나 그래도 법정부담금이 타대학에 비하여 적은 편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2012학년도에는 2011년에 비해 많은 금액이 대학에 지원될 계획이라고 설명함.</p> <p>(기획처장) 다음 등심위는 학생측 위원들이 결정하여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회의 일자를 알려 주기로 하고 폐회함.</p>	
결정사항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일정은 학생측 위원들이 결정하여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회의 일자를 알려 주기로함.	
특기사항		
회의록 배부처	작성연월일	2013. 02. 13.
	작성자	재무팀 김 용 훈